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장기로 정하고 있는 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, 뇌사판정서 기재사항 중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며,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, 의료기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장기로 정하고 있는 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(안 제2조제5호 삭제)
- 나. 뇌사판정서에 기재해야 하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(안 제22조제1항제6호 개정)
- 다.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(안 별표4 이식의료기관의 시설·장비·인력 등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장기등이식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22조제1항제6호의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별표 4 제1호가목 후단에 다음을 신설한다.

※ 비 고 : 인공호흡기는 회복실과 중환자실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장기등의 정의) (생략) 1. ~ 4. (생략) 5. <u>말초혈(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</u>	제2조(장기등의 정의) (생략) 1. ~ 4. (생략) 5. (삭제)
제22조 (뇌사판정서 및 회의록)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5. (생략) 6. 출석위원의 성명, <u>주민등록번호</u> 및 소속 기관	제22조 (뇌사판정서 및 회의록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출석위원의 성명, <u>생년월일</u> 및 소속 기관
[별표4] 이식의료기관의 시설·장비·인력 등 1. 시설 및 장비 가. 공통기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 (생략) 1) (생략) 2) 회복실: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 3) 중환자실: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 (생략) 7) 해부병리검사시설 < <u>신 설</u> >	[별표4] 이식의료기관의 시설·장비·인력 등 1. 시설 및 장비 가. 공통기준 (현행과 같음) 1) (현행과 같음) 2) (현행과 같음) 3) (현행과 같음) (생략) 7) 해부병리검사시설 ※ <u>비 고: 인공호흡기는 회복실과 중환자실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631